

<b>의 안 번 호</b>	<b>1630</b>	<b>【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</b>
<b>심 사 보 고 서</b>		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조례안 제출일자/제출자: 2020. 5. 28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: 2020. 5. 28.(목)
- 다. 위원회 조례안 심사일자: 2020. 6. 9.(화)
- 라. 위원회 번안 동의의 건 및 조례안 심사일자: 2020. 6. 10.(수)
- 마. 수정안 제출일자/제출자: 2020. 6. 15.(월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바. 위원회 회부일자: 2020. 6. 15.(월)
- 사. 위원회 수정안 동의의 건 및 조례안 심사: 2020. 6. 17.(수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예산실장 최정문)

### 가. 제안이유

일자리창출, 첨단산업단지, 미래신산업 육성 등의 업무집중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신설, 주민만족 향상 및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과 신설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신설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○ 부서개편

- 1) 국 신설: 일자리경제국(안 제3조)
- 2) 국 명칭변경: 복지경제국 → 복지환경국(안 8조)
- 3) 과 신설: 주민소통과(안 제7조)
- 4) 부서 폐지: 청렴감사관
- 5) 과 명칭변경(안 제6조, 안 제7조)
  - 일자리창출실 → 일자리기업과

- 경제산업과 → 경제진흥과
  - 회계정보과 → 회계과
  - 행정자치과 → 행정지원과
- 6) 과 직제변경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)
- (일자리경제국) ① 일자리기업과 ② 경제진흥과 ③ 회계과 ④ 세무1과 ⑤ 세무2과
  - (주민자치국) ① 행정자치과 ② 문화관광과 ③ 혁신교육과 ④ 회계정보과 ⑤ 세무1과 ⑥ 세무2과 ⑦ 민원지적과  
→ (주민자치국) ① 행정지원과 ② 주민소통과 ③ 문화관광과 ④ 혁신교육과 ⑤ 민원지적과
  - (복지경제국) ① 주민생활지원과 ② 노인장애인과 ③ 여성가족과 ④ 경제산업과 ⑤ 환경위생과 ⑥ 환경미화과  
→ (복지환경국) ① 주민생활지원과 ② 노인장애인과 ③ 여성가족과 ④ 환경위생과 ⑤ 환경미화과
  - (안전도시국) ① 안전총괄과 ② 건설과 ③ 도시과 ④ 교통과 ⑤ 건축과 ⑥ 공원녹지과 ⑦ 시설지원과  
→ (안전도시국) ① 안전총괄과 ② 건설과 ③ 도시과 ④ 교통과 ⑤ 건축과 ⑥ 공원녹지과 ⑦ 시설지원과

## ○ 분장사무 조정

- 1) 일자리창출실: 삭제
- 2) 청렴감사관: 삭제
- 3) 일자리경제국(안 제6조)
  - 가) 일자리정책, 일자리지원, 기업지원,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사항
  - 나) 경제정책, 전통시장, 농업, 축산업 등에 관한 사항
  - 다) 경리, 계약,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
  - 라) 세무, 시세, 구세, 과표 등에 관한 사항
  - 마) 지방소득세, 징수, 세외수입관리 등에 관한 사항

바) 도시재생 등에 관한사항 : 삭제

4) 주민자치국(안 제7조)

- 가) 총무, 인사, 정보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나) 주민자치, 구민협력, 청렴감사, 생활민원 등에 관한 사항
- 다) 문화예술, 문화관광,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라) 교육정책, 평생교육, 도서정책,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마) 민원1회방문처리제, 가족관계등록, 여권업무, 지적공부관리, 지가조사 및 부동산 관리, 새주소 등에 관한 사항

5) 복지환경국(안 제8조)

- 가) 복지정책, 희망복지, 통합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나) 노인정책, 장애인복지,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
- 다) 여성(외국인), 청소년, 보육,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
- 라) 공중위생, 식품위생, 녹색성장 등에 관한 사항
- 마) 환경보전대책,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
- 바) 경제정책, 산업진흥, 전통시장, 농업, 축산업 등에 관한사항: 삭제

6) 안전도시국(안 제9조)

- 가) 안전정책 총괄, 재난관리, 통신관제,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,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
- 나) 건설행정, 도로관리, 하천관리, 하수, 오수·분뇨 등에 관한 사항
- 다) 도시계획의 수립·조정 및 도시 재개발,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
- 라) 교통행정, 교통지도, 교통과정 등에 관한 사항
- 마) 경관디자인 및 광고물관리, 건축·주택행정, 건축허가관련 복합민원처리 등에 관한 사항
- 바) 공원관리, 녹지관리, 산림휴양,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
- 사)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(설계·심사·감독·준공), 문화재·대형 체육시설물 공사, 그 밖의 공사관련 지시사항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, 제114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, 제6조, 제13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영숙)

■ 본 조례안은 업무집중을 위한 일자리경제국 신설, 주민만족 향상과 주민소통을 위한 과 및 팀 신설 등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

#### ■ 검토 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관련,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은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시와의 연계성, 타 구와의 균형을 고려하였다고 판단됨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 관련,
 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그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· 독자성, 능률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, 본 개정조례안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- 동 규정 제6조 관련,
  - “국”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, “과”는 12명[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기구신설은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
- 동 규정 제13조 관련,

- 광역시 자치구는 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 일 때 “실·국”에 관하여만 수 제한이 있고, 두었으며 “과”에 대해서는 수 제한이 없음

## ■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의 불부합 사항이 없으며,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 하였고 변화하는 행정수요 반영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및 광역시의 정책방향, 구정 운영방향, 구청장 공약사항 등을 고려하였다고 보여지므로,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근 거 법 규

### 지방자치법

**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 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**제114조(사업소)**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 치할 수 있다.

#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**제5조(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· 독자성 · 계속성
2.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 성
3.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
4. 주민편의,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
5. 통솔범위,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
6. 사무의 위탁 가능성

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· 지방공단 ·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·과·담당관을 둘 수 없다.

**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**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 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.

② 실·본부[본부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나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“라 한다)에 한한다]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. 이 경우 실·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·군·자치구(이하 “시·군·구“라 한다)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.

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(국장은 제외한다)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,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.

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[시·도는 5급 4명 이상, 시·군·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

1. 국의 소관 업무(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)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

2.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
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(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,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)의 지휘·감독 하에 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

2.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3.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시·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

-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·보좌기관인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⑧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·국은 본부·단·부로, 과·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·국 또는 과·담당관으로 본다.

**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